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9
----------	-------

발의연월일 : 2026. 7. 28.

발 의 자 : 전은수 · 이정문 · 박균택
이학영 · 임미애 · 김정호
박상혁 · 문진석 · 이강일
김우영 · 오세희 · 모경중
의원(12인)

제안이유

산업都市는 국가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음. 특히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권역별 성장거점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업도시의 조성 과 확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교통·주거·교육·의료·돌봄 등 도시 생활 인프라의 확충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와 교육·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산업 및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현행 기업 지원 제도는 지방투자와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금융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를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업의 필수의료·교육·돌봄·교통·주거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역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산업과 산업도시의 성장 성과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환류되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인재의 정착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산업도시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도시의 성장과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고,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가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환류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도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상생지수를 개발·운영하여야 함(안 제8조).
-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상생지수 산정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지역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및 주민환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상생 우수기업 지원 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관계 제도의 개선에 활용하여야 함(안 제16조).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도시의 성장과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고,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가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환류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도시”란 기업과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등이 집적되어 지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소재한 지역

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가 소재한 지역

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가 소재한 지역

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 및
제15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또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가 소재
한 지역

바. 그 밖에 산업의 집적도, 생산액, 기업의 투자 규모, 지역의 인
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지역상생”이란 기업이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과의 거래, 주민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기반시설”이란 산업도시 주민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주거·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의 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4. “지역상생지수”란 산업도시 내 기업 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수준 및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기 위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5. “지역상생 우수기업”이란 지역상생지수 산정 결과 지역상생 수준
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상생과 주민환원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도시의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상응하여 교통·주거·교육·의료·돌봄 등 생활기반시설이 적기에 확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도시 내 기업이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상생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과정에 주민과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과 주민환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 등

제5조(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도시 지역상생 및 주민환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산업도시의 산업·인구·생활기반시설 등의 현황과 전망
3. 산업도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상생지수의 개발·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상생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기업 및 협력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산업도시의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상생 및 주민환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도시의 산업·기업·고용 및 인구 현황
2. 교통·주거·교육·의료·돌봄 등 생활기반시설 현황
3.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기업 거래 현황
4.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과 주민환원 실적
5. 산업도시의 원도심 및 지역상권 현황
6. 그 밖에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및 주민환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역상생민관협의체의 설치) ① 산업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상생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민관협의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지역상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기관이나 기업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대표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역상생지수 개발·운영 및 지역상생 우수기업 지원

제8조(지역상생지수의 개발 및 운영)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도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상생지수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상생지수의 평가항목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도시의 산업구조, 기업의 규모,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수준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상생지수의 평가항목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이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에 미친 실질적인 효과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생지수의 평가항목 및 측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상생 우수기업의 선정 신청) ① 산업도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 우수기업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상생 우수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상생 우수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상생지수 산정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지역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상생지수의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 및 선정 절차, 등급의 구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제15조(선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상생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지역상생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상생 우수기업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등급 조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평가 및 보칙

제16조(성과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및 주민

환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지수 운영 및 지역상생 우수기업 지원의 성과
2. 산업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기업 거래 확대 효과
3.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미친 효과
4. 그 밖에 지역상생 및 주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관계 제도의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지역상생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의 지급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료 제출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상생 우수기업,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